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21호

2026. 5. 21.(목)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차 례

고 시

- 제2026-38호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3

공 고

- 제2026-893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7
- 제2026-9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 제2026-923호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29
- 제2026-931호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42

인 사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38호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2-1번지 일대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2-1번지 일대
- 나. 구역면적 : 116,314.4㎡
-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79, B상가 204호
- 라. 토지등소유자 수 : 3,453명
-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직책	이름	주 소
1	위원장	김형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4동 904호
2	감사	김용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섭발로 265, 10동 401호
3	추진위원	김희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1동 412호
4	추진위원	박성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1동 612호
5	추진위원	노정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0, 104동 1005호
6	추진위원	한민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2동 401호
7	추진위원	박병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2동 903호
8	추진위원	우선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18, 102동 1101호
9	추진위원	장경승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2동 1204호
10	추진위원	홍성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2동 1501호
11	추진위원	송봉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3동 101호
12	추진위원	김희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6동 2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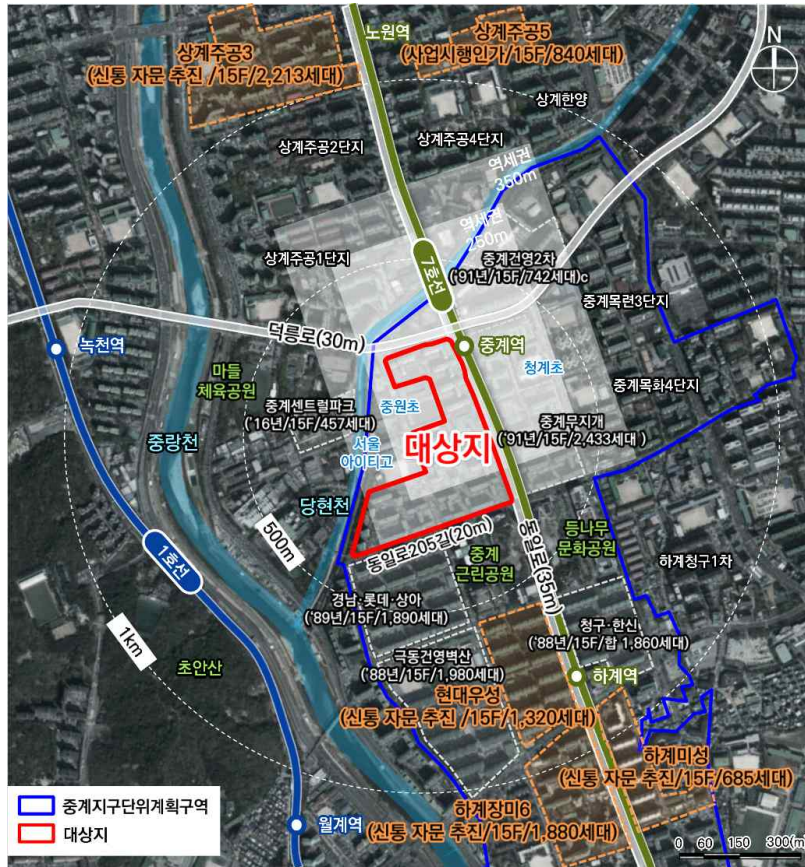
연번	직책	이름	주 소
13	추진위원	박상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6동 206호
14	추진위원	임채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63, 2209동 803호
15	추진위원	이순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8동 812호
16	추진위원	김화자B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3동 1012호
17	추진위원	윤영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3동 1105호
18	추진위원	남병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1동 301호
19	추진위원	이명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65, 5동 401호
20	추진위원	김순옥A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2길 9-2, 3층
21	추진위원	이미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0길 134, 111동 701호
22	추진위원	강승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33, 110동 301호
23	추진위원	김성현A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5, B동 B01호
24	추진위원	박송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4동 1008호
25	추진위원	김호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4동 1106호
26	추진위원	유은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5동 106호
27	추진위원	권주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5동 110호
28	추진위원	주위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5동 1004호
29	추진위원	신종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5동 1405호
30	추진위원	김희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17, 106동 103호
31	추진위원	유명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6동 302호
32	추진위원	최선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6동 406호
33	추진위원	박유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3동 1405호
34	추진위원	박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9나길 20-6, 301호
35	추진위원	김명희A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6동 714호
36	추진위원	장순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6동 1014호
37	추진위원	문관국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35, 1405동 402호
38	추진위원	차현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4길 20-4
39	추진위원	임민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8동 107호
40	추진위원	박찬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19-6, 302호
41	추진위원	지혜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5길 33-7, 201호
42	추진위원	김경자C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8동 318호
43	추진위원	신춘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4길 20-4
44	추진위원	권귀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21, 105동 205호
45	추진위원	박남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29, 9동 302호
46	추진위원	고철승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8동 913호
47	추진위원	김은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8동 1011호
48	추진위원	박훈애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6길 29, 403동 1107호
49	추진위원	민승덕	서울특별시 종랑구 봉화산로33길 28-3, 4층 404호
50	추진위원	노영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9동 610호
51	추진위원	이순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9동 813호
52	추진위원	이봉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9동 814호
53	추진위원	손혁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9동 907호
54	추진위원	조창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09동 915호
55	추진위원	신영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0동 501호
56	추진위원	전용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278번길 17, 207동 301호
57	추진위원	박계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74, 4층호

연번	직책	이름	주 소
58	추진위원	김덕순A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1동 1103호
59	추진위원	원동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 205호
60	추진위원	권구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 402호
61	추진위원	이숙자B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 413호
62	추진위원	김나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 604호
63	추진위원	최용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 903호
64	추진위원	이태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 1002호
65	추진위원	윤희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1202호
66	추진위원	장인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2동 1502호
67	추진위원	임희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56, 405호
68	추진위원	유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3동 711호
69	추진위원	백재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3동 906호
70	추진위원	김승현A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선로 60, 108동 1703호
71	추진위원	김혜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4동 1305호
72	추진위원	김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5동 1305호
73	추진위원	한지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1나길 47, 2층
74	추진위원	김영자E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6동 102호
75	추진위원	양우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6동 104호
76	추진위원	권향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19동 1301호
77	추진위원	최요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6동 604호
78	추진위원	심영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17, 909호
79	추진위원	박정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6동 813호
80	추진위원	예창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6동 1312호
81	추진위원	남미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6동 1407호
82	추진위원	유원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7, 116동 1512호
83	추진위원	홍정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17동 907호
84	추진위원	박양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17동 1107호
85	추진위원	김이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18동 903호
86	추진위원	김영주B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19동 1101호
87	추진위원	백승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0동 103호
88	추진위원	박경숙B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0동 404호
89	추진위원	정정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0동 1201호
90	추진위원	조영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1동 604호
91	추진위원	박준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1동 607호
92	추진위원	고훈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2, 103동 1710호
93	추진위원	안창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1동 1303호
94	추진위원	박경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1동 1305호
95	추진위원	김현경A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1동 1407호
96	추진위원	한윤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2동 204호
97	추진위원	양윤정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5길 30, 203호
98	추진위원	유현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2동 605호
99	추진위원	장화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2동 609호
100	추진위원	김민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18, 102동 305호
101	추진위원	김성현B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85, 122동 1501호
102	추진위원	최재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6, 1904

연번	직책	이름	주 소
103	추진위원	김정자C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25번길 20-20, 401호
104	추진위원	양진영B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6로 33, 3213동 303호
105	추진위원	김수정C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285, 124동 515호
106	추진위원	오영숙B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234, 305동 104호
107	추진위원	서경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285, 124동 808호
108	추진위원	소민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285, 124동 1310호
109	추진위원	최승만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43번길 32, 208동 302호
110	추진위원	정학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832번길 55-12, 데니막스
111	추진위원	김진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1102동 401호
112	추진위원	심수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285, 125동 807호
113	추진위원	최돈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발로 285, 121동 1305호
114	추진위원	박종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태봉로 17, 503동 404호
115	추진위원	김석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23, 401호

3.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자 : 2026년 5월 20일

4. 중계그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



공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893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및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에 의거 중계4동에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 등록(재등록)한 사항을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공 고 명 :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2. 공고내용 : 중계4동장의인민원사무전용(중)

중계4동장의인민원사무전용(중)

구분	공인명	인영	서체	규격(cm)	폐기일 및 재등록일	사유
폐기	중계4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중)		훈민정음체	2.1*2.1	2026. 5. 11.	인증기 불용에 따른 공인 폐기 및 신규인증기 설치에 따른 등록
재등록	중계4동장의인 민원사무전용(중)		훈민정음체	2.1*2.1	2026. 5. 12.	

3. 공고기간: 2026. 5. 21. ~ 2026. 6. 4.

4. 공고방법: 구보 게재

5.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02-2116-324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915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사항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우리 구 금고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 등(안 제7조제2항, 별표 1, 별표 2)
-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 정비(안 제10조)
- 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화(안 제12조제1항)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재무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2116-3461, FAX: 2116-4619, 이메일: may16@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우리 구 금고 선정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 등(안 제7조제2항, 별표 1, 별표 2)
-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회피 규정 정비(안 제10조)
- 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화(안 제12조제1항)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를 “다른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제1항 중 “출연하여야”를 “출연해야”로, “공개하여야”를 각각 “공개해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필요한”을 “필요할”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원구의회의에서”를 “노원구의회 의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에게 공정을”을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로, “특별한 사정”을 “사정”으로, “기피”를 “위원회에 기피”로, “있다”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제3항 중 “또는 제2항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고 참여의사”를 “금고지정에 참여의사”로,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를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운영중”을 “운영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지하고자 하는”을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완관리”를 “보안관리”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별표 1 및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8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 (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단, 현금출연만 인정)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공개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
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
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생
략)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
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
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 4. (생 략)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
사업 추진능력

<신 설>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
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
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
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협력
사업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
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

----- 출연해야 -----

--- 공개해야 -----

공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② (생략)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금고지정 심의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금고약정 체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이상

2. (생략)

3.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③ · ④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생략)

② 위원회 심의 · 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정하려는 -----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필요할 -----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임명 또는 위촉하되-----
-----.

1. ----- 노원구의회 의장
의 -----

2. (현행과 같음)

3. ----- 4급 이상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 사정-----
----- 위원회에 기피 ---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회피해야 한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 금고지정에 참여의사

-----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
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
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
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5조(금고약정)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
다.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생
략)

-- 운영 중-----

-----.

제14조(금고의 지정) -----

운영 중-----

-----.

제15조(금고약정)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운영 중-----

-----.

⑤ -----

----- 협조해야 -----
-----.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현
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구청장
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
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기
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
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
산시스템 보완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② -----
---- 해지하려는 -----

-----.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 보완관리 -----

-----.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

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2025. 12. 9.>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4.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의견제출서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923호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반영 및 용어 정비

나.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제2조제1항제1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제1조 등 다수)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재무과,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전화: 2116-3460, FAX: 2116-4619, 이메일: ohsb74@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지방회계법」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 내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제1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 회계관계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계기한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을 “출납원이란”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한다.

4.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 본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인은 다음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6조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납관계 직인대장

제6조제2호 전단 중 “직인 대장”을 “직인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를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그 직인이 닳거나 직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중 “의할”을 “따를”로 한다.

제11조 중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를 “구보에 공고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u> <u>직인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노원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u>회계관계공무원</u>”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u>게기한 공무원</u>을 말한다. 1. 징수관, <u>경리관</u>, 지출원과 출납원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u>게기한 자</u>의 분임자 <u><신설></u> ② 제1항제1호의 <u>규정중 출납원</u>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	<u>서울특별시 노원구</u> <u>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u>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u>----- ----- ----- <u>필요한</u> ----- -----. 제2조(정의) ① ----- -----<u>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 --. 1. ----- <u>재무관</u>----- -- 2. (현행과 같음) 3. ----- <u>해당하는 사람</u>--- 4. <u>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u> ② ----- <u>출납원이란</u> ----- -----

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
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
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
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
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생
략)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
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
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
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소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직인 대장 ... 징수과
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세입세출외 현금출
납원-----.

제3조(직인의 비치) -----

--- 비치해야 ----. -----

----- 사람은 예
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현
행과 같음)
② ----- 따른다.

제5조(각인) -----

--. ----- 여
러 개----- 그 밖
에 -----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
해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
2. -----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하
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
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
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
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
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
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
인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
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제7조(직인의 등록) ① -----
----- 제6
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해야 ----.

② ----- 제1
항에 따른 -----
않으면 -----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노
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
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
출해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
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그 직인
이 닳거나 직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관
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직인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

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
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특례) -----

----- 따를 -----

-----.

제11조(공고) -----

----- 구보에 공고해야 --
-----.

〈 관계법령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나.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마. 채권관리관

바.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 공무원 및 물품 사용 공무원

사. 재산관리관

아.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자.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차. 회계책임관

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分任者)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법령, 정관, 사규(社規) 등에 규정된 사람

나. 관계 법령, 정관, 사규 등에 따라 임명된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 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 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 행위) 재무관은 명

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31조(지출의 절차) 재무관이 자기 소관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예고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1.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대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5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05.21.(목) ~ 2026.06.23.(화)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하계1동 주민센터

다.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온라인(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제출

마. 공람내용

－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별첨 ‘요약본’ 참고

라. 기타 공지사항

－ 상기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대	—	증) 33,524.2	33,524.2	—

2.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33,524.2	100.0	—
획 지	소 계	31,401.4	93.7	—
	공동주택	31,401.4	93.7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122.8	6.3	—
	소공원	1,477.8	4.4	—
	도 로	645.0	1.9	—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3,524.2	—	33,524.2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77.8	—	1,477.8	4.4	—
	제3종일반주거지역	32,046.4	—	32,046.4	95.6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

용도지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위치 변경 - 면적 : 1,477.8㎡	공원 위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25	10	국지도로	250	하계동 256-7	하계동 256-7	일반도로	건고시262 (90.08.14.)	-
변경	소로	1	125	10~13	국지도로	250	하계동 256-7	하계동 256-7	일반도로	건고시262 (90.08.14.)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25	소로 1-125	- 도로 폭원 변경(일부 확폭) - 폭 : 10m → 10m~13m - 연장 : 변경 없음	진출입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확폭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하계동 256-5번지	-	증) 1,136.32	1,136.32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하계동 256-5번지	수평투영 면적	-	증) 1,136.32	1,136.32	-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	증) 지하2층	지하2층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136.32㎡ - 입체적 결정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 및 주변 상업시설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계획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곰돌이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하계동 256-6번지	1,477.8	감) 1,477.8	-	건고시547 (89.10.06.)	-
신설	-	소공원	하계동 256-5번지	-	증) 1,477.8	1,477.8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⑩	곰돌이 어린이공원	폐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A	-	- 공원 신설 - 면적 : 1,477.8㎡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신설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적기준	면적(㎡)	비고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하계동 256-5번지 일대	330.0㎡ 이상	350.0	—
	어린이집		330.0㎡ 이상	350.0	개방
	다함께 돌봄센터		66.0㎡ 이상	340.0	개방
	작은도서관		158.0㎡ 이상	160.0	—
	주민운동시설		—	350.0	—
	어린이놀이터		—	1,000.0	개방
	주민공동시설		—	800.0	—
	맘스스테이션		—	90.0	—
	소 계		940세대 × 2.5㎡ × 1.25 = 2,937.50㎡	3,440.0	—
부대시설	경비실		10 + (940세대 - 50) × 0.05 = 54.50㎡	330.0	—
	관리실		—	20.0	—

※ 향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 공공개방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통합심의 시 세부용도 확정 예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33,524.2	—	31,401.4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대	8	—	—	8	—	주거동 6개동/ 비주거동 2개동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법적 상한 초과		
신규	한신동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3,524.2	획지	31,401.4	노원구 하계동 256-5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50 이하	210	250	258.9	300	340	150m 이하 (46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940세대		100.0		-					
			60㎡이하		266세대		28.3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60~85㎡ 이하		474세대		50.4		공공주택 34세대 포함					
			85㎡ 초과		200세대		21.3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78.7%											
심의완화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 완화)											
			구분	내용										인센티 브
			열린단지	• 단지 외각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성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										5%
			BF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일반등급 3%										3%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210% × (294㎡ ÷ 2,937.5㎡) × 0.1 = 2%										2%
			층간소음 해소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2등급 3%										3%
			친환경 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5 5.5%,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1.5%										7%
			대상지	20% 적용										
			• 허용용적률 250% - 사업성 보정계수 : 2.0 ⇒ 210% + (20% × 2.0) = 250%											
			• 상한용적률 258.9%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공원, 도로, 주차장)											
			• 법적상한용적률 300% - 공공주택 용적률 : (300.0% - 258.9%) × 50% = 20.55%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340% - 공공주택 용적률 : (340% - 300%) × 70% = 2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글비석로(주간선도로, 30m)변 건축한계선 6m • 노원로 14길(13m)변 건축한계선 3m											

※ 건축시설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 이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배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회혼합 기준 검토(안)」 적용

6) 용적률 산정내용

구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계획 (㎡)	구역면적	획지	순부담 면적	(신설+존치)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B)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C)	건축물 기부채납(D)		
				신설 정비기반시설 (A)					환산부지 면적	대지지분	
				소계	도로	공원					
	33,524.2	31,401.4	996.6	2,122.8	645.0	1,477.8	—	1,477.8	143.2	208.4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A)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B)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C) + 건축물 기부채납(D) = 2,122.8㎡ - 1,477.8㎡ + 143.2㎡ + 208.4㎡ = 996.6㎡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 100 = (996.6㎡ ÷ 33,524.2㎡) × 100 = 3.0%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4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계획,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 = 기준용적률 + (①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②사업성 보정계수) = 210% + (20% × 2.0) = 250.0% 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 : 열린단지(5%), BF인증(3%), 돌봄시설(2%), 층간소음 해소(3%), 친환경건축물(7%) ② 사업성 보정계수 : 2.0 : 공시지가 보정계수 + 대지면적 보정계수(α) + 세대밀도 보정계수(β) = 2.0 + 0 + 0 = 2.0 - 공시지가 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2025년)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2025년 01월) = 8,043,979원/㎡ ÷ 4,041,929원/㎡ = 2.0 - 대지면적 보정계수(α) = 해당없음 (적용대상 대지면적 2만㎡ 미만 단지) - 세대밀도 보정계수(β) = 해당없음 (직선보간 값)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구 분	인센티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p 이내	적용 5%	
	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5%p 이내	일반등급 적용 3%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 ÷ 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 × α * α = 0.1 이하 ⇒ 210% × [(340㎡ - 66㎡) + (350㎡ - 330㎡)] ÷ 2,890.63㎡ × 0.1 = 2.13%							5%p 이내	적용 2%	
	층간소음 해소	- 바닥(중량)충격을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p 이내	2등급 적용 3%	
	친환경 건축물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 에너지효율 1++ 3%(6%), 에너지효율 1+ 1.5%(3%) ②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등급 3%(6%), 우수등급 1.5%(3%) *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							7.5%p (15%p) 이내	ZEB5 인증 (5.5%) + 녹색건축 우수등급 (1.5%) 적용 7%	
	합 계	최대 20%p 이내								20%p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2025)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통합심의 전 완화항목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0%(최대 20% 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보정계수 적용) + {허용용적률(보정계수 미적용) × (1 × 1.3 × α토지 + 0.7 × α건축물)} = 250% + {230% × (1 × 1.3 × 0.02736 + 0.7 × 0.00459)} = 258.9%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853.4㎡ ÷ 31,193.0㎡ = 0.02736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143.2㎡ ÷ 31,193.0㎡ = 0.00459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300.00% 이하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 340.0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통합심의 전 완화항목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용적률 산정식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5.03.18.) 적용
 ※ 최종허용용적률 : 사업성 보정계수 2.0 적용한 허용용적률(250%)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지형·지질	•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 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한 계획	-
	동·식물상	• 보존 가치가 있거나 중요성이 있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하고, 사업시행 시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잔여 수목은 조경업체 또는 인근 공사장으로 공급하여 이식 (사업지구 내 녹지를 최대한 30%이상 확보)	
	폐기물	•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공사 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소음·진동	• 공사 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야간작업 금지 • 노후장비 이용을 지양하고 저소음 건설 장비를 선정하여 이용	
재난방지	수해	• 대상지로부터 반경으로 약 1km이내 하천이 위치하지 않음 • 대상지는 한강 및 중랑천 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고도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태풍 및 강마 등으로 인한 홍수재해에 유리함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에 대비 • 강우시 공사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지작업시 절·성토 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 시설을 설치 • 정비구역 내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	-
	화재	• 공동주택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계반영	
	방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	
	교통	•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500m 이내 용동초, 하계중, 대진고, 혜성여고, 동천학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계획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협의 후 반영하겠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신설	획지1	31,401.4	노원구 하계동 256-5번지 일원	31,401.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이하 여백 -

인 사

노 원 구

(발령 제133호)

구분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신 희 선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보 건 소 월 계 보 건 지 소	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라 급

2026. 5. 18.字.